

의안번호	2216019
의 퇴 인	이재관 의원
회 답 일	2026. 3. 4.
추계번호	26A02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1조제2항제4호 (부담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¹⁾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항) 4.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공급하는 전기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1조제2항제4호 (부담금)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1)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요금 부과 시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의 경우 2조 7,646억원이 부담금 수입으로 수납되었음

[표 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수입(2023~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부담금 수입 결산액	30,083	30,757	27,646

주: 2025년의 전력기금 수입 결산은 예상 수치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안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기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2026년 2월)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기금 수입 감소분을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기금 수입 감소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